서 울 특 별 시

훈령 발령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 / 전송 (02)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시청본관 3층) / 과장: 박 돌봉 계장: 김 영한 담당자 : 김 현주

문서번호 법무 11010-

시행일자 1998. 7. . (년)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기획관리실장	전결	7/24
법무담당관		
◉ 법제계장		
★ 기안	김현주	협조

훈령 제886-887호

제목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 등 2건 발령

1.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7. 31 (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86 ~7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2안)

수신 : 공보담당관

제목 : 훈령 시보 게재

1.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7. 31 (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86 ~7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3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훈령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7. 31 (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86 ~7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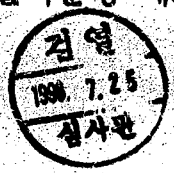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감사담당관(시민감사관), 하수행정과장

훈 령 발 령 목 록

□ 2건 (개정)

연 번	법 규 명	번 호	주 관 부 서
1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	제886호	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2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제887호	하수행정과
	"이 하 여 백"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7 월 3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고 건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본래의 취지를 가미하고 현행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민감사관의 자격·임기·겸직금지 등 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특히 공무원 출신 및 변호사로 제한된 임명자격을 사회단체 추천자까지 확대함(안 제6조 제2항, 제8조 및 제9조).

나. 시민감사관의 직무·권한, 관할 및 관할제외 등 활동범위를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다. 고충민원 및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절차와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의뢰하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내지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기존예산 활용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합의되었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직무·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시정감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제15조 제1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항"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시민감사관의 구성 등

제4조(설치) 고충민원 등을 접수·상담하고,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감시하여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둔다.

제5조(지위) ①시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 소속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구성) ①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미만인 자를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1. 감사원에서 3급이상 감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대검찰청 등에서 3급이상 검찰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1년이상 감사 분야에 근무 경험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대표시민감사관) ①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이 호선한다.

②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을 대표하며 시민감사관의 운영 및 업무의 조정을 총괄한다.

③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65세에 달한 날이 있는 달의 말일에 당연퇴직된다.

②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시민감사관이 제2호 1·2·3·4호에 해당하여 면직될 경우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4.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5. 시민감사관의 관할대상에 속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조사에서 제척 된다.

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시민감사관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가족 또는 호주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시민감사관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시민감사관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에게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시민감사관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고충민원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한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여비 등)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이 규정에 규정된 것외에 시민감사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등

제14조(직무 등)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2. 고충민원에 관한 접수·조사·처리
3. 시민감사관의 발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의 조사
4. 시장 및 시의회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조사
5. 고충민원에 관한 접수·조사·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행정기관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중재
6.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또는 발의에 의한 사안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7. 고충민원의 처리과정 또는 발의에 의한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8. 제3호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결과의 통보 요구
9. 제2호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의 공표

제15조(관할) ①시민감사관의 직무관할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2. 자치구(국가 및 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
4. 국비 또는 시비를 보조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5. 시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②시민감사관의 직무관할 대상행위(이하 "관할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고충민원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직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 등

제16조(관할의 제외)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거나 이용·제공·열람이 제한되는 사항
8. 시민감사관 업무에 관한 사항
9. 제14·15조에 규정된 시민감사관의 직무·권한 및 관할외의 사항
10. 시민감사관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직무의 수행) 시민감사관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표시민감사관이 지정하는 사안은 시민감사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제18조(시민감사관 수행업무의 표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업무는 그 문서의 표지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민의 조사 참여) ①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및 특정한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신청인·시민단체 임·직원·전문가 등(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민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20조(보고) 시민감사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익년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21조(고충민원의 신청) 시민감사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이하 "문서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문서 등에 의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6.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22조(고충민원의 조사) ①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신청인이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3.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시민감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민감사관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시민감사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의 방법) ①시민감사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 자료·서류의 제출 요구
2.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시민감사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징계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시민감사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시민감사관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징계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당해 관계 행정기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임·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민감사관에게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결정의 통지) 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고충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통신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 행정기관의 의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관의 요구 등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시민감사관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고충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공표) 시민감사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과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장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행 정 감 시

제31조(특정한 사안의 채택) 시민감사관은 시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발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을 채택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특정한 사안의 조사, 조사의 방법, 시정·징계 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 조사 결과의 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의무, 처리 결과의 통보 및 공표에 관하여는 제22조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감 사 등

제33조(감사 등) ①시장 또는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에게 감사·조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의회에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의뢰하여 감사를 할 경우 감사의 방법,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 관계 행정기관의 의무, 공표에 관하여는 제23·25·27·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571 / 전송(02) 731-6586
처리부서 : 감사담당관(시민감사관, 본관 3층) 담당 박 용 과

문서번호 감사 16000 - 632
시행일자 1998. 7. 22.

수신 법무담당관

선결	법무담당관		지시		
접수	일자시간	98. 7. 23	결재·공람	법제계장	
	번호				
처리과					
담당자	김현구				

제 목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훈령)개정규정 발령의뢰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 발령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 개정규정(안)1부. 끝.

감사담당관 김현구

감 사 담 당 관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571 / 전송(02) 731-6586
감사담당관 김창곤 / 계장 이연홍 담당 박 용 파

문서번호 감사 16000-
시행일자 1998. 7. .
(제1안)
수 신 내부결재

0871

결재 1998. 7. 21 시장

취급		시 장
보존		조건 /
행정1부시장		
감사실장		
감사담당관	김창곤	법무담당관 심사필
기안	이연홍 이연홍	협조

제 목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운영규정(훈령 제857호) 개정

1.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97. 7~'98. 6까지 시민이 직접 민원처리·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옴부즈만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이 있어

2.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옴부즈만제도 본래의 취지를 가미하고자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훈령 제857호)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안) 1부. 끝.

(제2안)

수 신 법무담당관

제 목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훈령)발령 의뢰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 발령 의뢰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 1부. 끝.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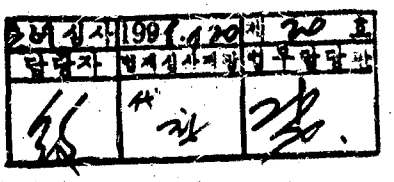

1. 개정이유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본래의 취지를 가미하고 현행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민감사관의 자격·임기·겸직금지 등 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특히 공무원 출신 및 변호사로 제한된 임명자격을 사회단체 추천자까지 확대함(안 제6조 제2항, 제8조 및 제9조).

나. 시민감사관의 직무·권한, 관할 및 관할제외 등 활동범위를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다. 고충민원 및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절차와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의뢰하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내지 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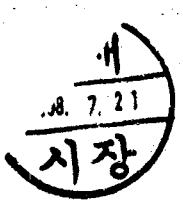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기존예산 활용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합의되었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직무·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시정감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제15조 제1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항"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시민감사관의 구성 등

제4조(설치) 고충민원 등을 접수·상담하고,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감시하여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둔다.

제5조(지위) ①시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 소속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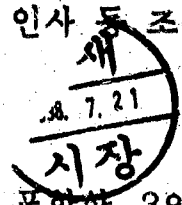

제6조(구성) ①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미만인 자를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1. 감사원에서 3급이상 감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대검찰청 등에서 3급이상 검찰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1년이상 감사 분야에 근무 경험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대표시민감사관) ①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이 호선한다.

②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을 대표하며 시민감사관의 운영 및 업무의 조정을 총괄한다.

③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65세에 달한 날이 있는 달의 말일에 당연퇴직된다.

②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시민감사관이 제2호 1·2·3·4호에 해당하여 면직될 경우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4.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5. 시민감사관의 관할대상에 속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조사에서 제척 된다.

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시민감사관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가족 또는 호주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시민감사관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시민감사관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에게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시민감사관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고충민원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한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여비 등)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이 규정에 규정된 것외에 시민감사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등

제14조(직무 등)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2. 고충민원에 관한 접수·조사·처리
3. 시민감사관의 발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의 조사
4. 시장 및 시의회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조사
5. 고충민원에 관한 접수·조사·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행정기관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중재
6.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또는 발의에 의한 사안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7. 고충민원의 처리과정 또는 발의에 의한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8. 제3호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결과의 통보 요구
9. 제2호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의 공표

제15조(관할) ①시민감사관의 직무관할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2. 자치구(국가 및 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
4. 국비 또는 시비를 보조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5. 시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②시민감사관의 직무관할 대상행위(이하 "관할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고충민원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직무
3. 제1호및 제2호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 등

제16조(관할의 제외)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거나 이용·제공·열람이 제한되는 사항
8. 시민감사관 업무에 관한 사항
9. 제14·15조에 규정된 시민감사관의 직무·권한 및 관할외의 사항
10. 시민감사관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직무의 수행) 시민감사관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표시민감사관이 지정하는 사안은 시민감사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제18조(시민감사관 수행업무의 표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업무는 그 문서의 표지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민의 조사 참여) ①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및 특정한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신청인·시민단체 임·직원·전문가 등(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민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20조(보고) 시민감사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익년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재 98. 7. 21 시장

제 4 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21조(고충민원의 신청) 시민감사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이하 "문서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문서 등에 의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6.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22조(고충민원의 조사) ①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신청인이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3.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시민감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민감사관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시민감사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의 방법) ①시민감사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 자료·서류의 제출 요구
2.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시민감사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31 시장

제24조(시정·징계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시민감사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시민감사관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징계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당해 관계 행정기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임·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민감사관에게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결정의 통지) 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고충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통신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 행정기관의 의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관의 요구 등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시민감사관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고충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공표) 시민감사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과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장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행 정 감 시

제31조(특정한 사안의 채택) 시민감사관은 시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발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을 채택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특정한 사안의 조사, 조사의 방법, 시정·징계 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 조사 결과의 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의무, 처리 결과의 통보 및 공표에 관하여는 제22조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감 사 등

제33조(감사 등) ①시장 또는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에게 감사·조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의회에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의뢰하여 감사를 할 경우 감사의 방법,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 관계 행정기관의 의무, 공표에 관하여는 제23·25·27·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7. 21
시장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개정(요약)

□ 종전 규정과 달라진 점

○ 기능 : 민원처리 및 감사업무 참여(감사결과 통보)
⇒ 고충조사 처리 및 행정감시 (시정권고, 의견표명)

○ 임명 : 시민단체·변호사회 등에서 추천→감사자문위원회 선임
→ 시장임명

○ 임기 : 1년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65세 정년

○ 자격 : 감사원·검찰 및 국가·지자체 감사분야 근무경력자로서 3급이상, 변호사 ⇒ (추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자격제한 :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정당원, 정치단체 구성원 등

○ 권한 : 감사참여 ⇒ 조사·감시·중재·권고·공표·조치결과 통보요구권

○ 고충접수 : 시민감사관 직접접수(방문, 서신, FAX, P.C통신등)

□ 종전규정과 동일한점

○ 설치근거 : 시 훈령

○ 신　　분 : 지방전문직공무원 (계약직)

○ 근무조건 : 주 3일근무, 보수 월 평균 1,409천원 (상여금 포함)